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9

발의연월일: 2024. 6. 21.

발 의 자:어기구·김정호·박 정

박희승 • 민형배 • 이개호

이병진 • 이연희 • 정준호

허종식・황 희 의원

(119]

제안이유

한우산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미국, 호주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약화되고 있음. 이에 더해 한・미 FTA에 따른 소고기 관세율 인하일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으로 현재의 생산기반 약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붕괴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세계유일의 유전자원인 한우는 축산인들에게는 주요 소득원이자, 국민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으로,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, 경영개선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한

우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한우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제1조).
- 나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· 시행하고,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· 시행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다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·사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- 라.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함(안 제8조).
- 마.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농업으로 의 전환,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(안 제 9조).
- 바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,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

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(안 제11조).

- 사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.
- 아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 및 부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.
- 자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, 토종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하여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함(안 제15조).
- 차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부산물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·개발을 추진하고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함(안 제18조).
- 카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,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확 충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(안 제20조).
- 타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,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(안 제23조).
- 파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, 대표브 랜드를 선정·육성하기 위한 한우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(안

제24조).

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우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한우"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사육 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소의 품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 - 2. "한우농가"란 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 나 등록을 한 자가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.
 - 3. "한우산업"이란 한우의 생산·사육·가공·포장·보관·수송·유통·판매·수출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

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한 우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.
- ③ 한우농가는 저탄소 축산물의 생산을 통한 탄소중립의 실현과 환경친화적 축산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

- 제5조(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
 - 2. 기후변화에 따른 한우의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
 - 3.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 지원방안
 - 4. 한우 유통ㆍ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

- 5. 한우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
- 6. 한우 유전자 보존 및 국내 환경에 맞는 종모우 생산에 관한 사항
- 7. 「축산법」 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한우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추진에 관한 사항
- 8. 한우의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 및 경축순환의 활성화 방안
- 9.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재생에너지 확대방안
- 10. 그 밖에 한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 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 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-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관 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⑦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한우산업의 육성

- 제6조(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우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·관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통계법」을 준용한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, 범위 및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7조(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한우의 생산·사육·유통·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(이하 "정보관리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한우산업발전협의회) ①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(이하 "협의회"이라 한다)를 둔다.
 - 1.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
 - 2.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
 - 3.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
 - 4. 자원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
 - 5. 한우의 유통 및 수출 지원
 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

- 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1.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
- 2. 전국한우협회를 대표하는 사람
- 3. 한우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
- 4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
- 5. 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원
- 6. 그 밖에 한우산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- ③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수급조절협의회. 한우수출지원협의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탄소저감 정책의 추진)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한다.
 - 1. 경축순환농업으로의 전환
 - 2. 탄소감축 기술개발의 지원
 - 3. 그 밖에 한우농가의 탄소저감 촉진에 필요한 사항
- 제10조(연구・기술개발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효율적 생산

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·개발하여 한우농가에 보급하여야 한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1. 한우의 품종 육성 및 종모우 증식기술의 고도화
- 2. 한우의 사양 · 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
- 3.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
- 4. 그 밖에 한우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장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

- 제11조(한우의 수급조절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(이하 "한우수급정책"이라한다)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

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수급정책 수립 시 한우 사육규모에 따라 환경·사회적 책임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12조(도축 및 출하 장려금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 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경영비용부담 완화 대책) 국가는 한우농가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료 및 조사료 구매자금 지원 등 생산비 감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14조(경영개선자금 지원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또는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 및 부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 개선을 위한 자금(이하 "경영개선자금"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(이하 "경영개선계획"이라 한다)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한우농가의 소재지 및 사육두수
 - 2. 한우의 사육 방법

- 3. 경영개선의 개요 및 기본계획
- 4. 경영개선계획의 시행 시기 및 기간
- 5. 그 밖에 경영개선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 부렁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경영개선계획의 제출, 타당성 검토, 통보의 절차·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자급률 확보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, 토종한우 유전 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하여 자급률 목표를 정하 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.
- 제16조(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.
 - 1. 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저탄소 사양에 대한 교육
 - 2. 한우의 부가가치 향상에 대한 교육
 - 3. 한우의 효과적인 유통방법에 대한 교육
 - 4.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 관 또는 단체를 한우농가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

- 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한우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또는 포상을할 수 있다.
- 제17조(소규모 한우농가의 컨설팅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지, 생계비 및 한우산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한우농가(이하 "소규모 한우농가"라 한다)에 대하여 경영 ·기술·재무·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방역을 위하여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제18조(부산물의 활용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·가공· 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(이 하 "부산물"이라 한다)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·개발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부산물을 식용으로 공급하는 자에 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 요건을 충족하 는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9조(소비촉진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 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- 제20조(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- 1.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
 - 2. 한우 산지 처리의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
 - 3. 한우의 유통구조 개선 및 확충
- 제21조(도축·가공시설의 구축 등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 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권역별 도축·가공시설 구축 및 도축장 의 현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축장 간의 물류기능 통합과 수도권 판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산물종합물류센터의 설치 또는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거점도축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판로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22조(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 한우유통 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프라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수출기반 조성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1. 해외개척,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
 - 2. 수출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·훈련
 - 3. 수출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
 - 4. 한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

- 5. 그 밖에 수출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4조(한우 품평회 개최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, 대표브랜드를 선정·육성하기 위한 한우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한우 품평회 개최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5장 보칙

- 제2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26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 - 1. 제6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
 - 2.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· 운영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

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

- 3.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
- 4. 제2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 아 수행하는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